##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40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복기왕·김태선·최기상

맹성규 · 송재봉 · 임호선

문진석 • 박은정 • 이연희

박용갑ㆍ채현일ㆍ정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 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 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
아니하다.	<u>지 아니하다.</u>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조에 따른 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
	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
	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
	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
	<u>받는 사업</u>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